주택담보대출 상품설명서

| 본인확인 | 담당 | 책임자 | 지점장 |
|------|----|-----|--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- ◈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중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◈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-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·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-

🕑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- 주택담보대출은 주택(단독주택·아파트·다세대주택 등)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 상품으로,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, 이주비대출,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을 포함합니다. (예시 : 모기지론, 아파트론 등)
-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인만큼 고객님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한도 및 금리가 정해지는 신용대출에 비해 일반적으로 금리수준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주택담보대출은 **대출의 목적, 주택의 위치·시세 등**에 따라 대출의 가능여부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(만원 · 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

- Q1. 주택담보대출 관련 별도 약정을 체결했는데, 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- A. 관련 법령에 따라 체결된 별도 약정을 위반한 경우 대출만기 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.
- Q2.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?
 - A. 본인의 주택 소유여부, 주택이 위치한 지역, 시세,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상세한 내용은 은행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- Q3.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
 - A.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**중도상환해약금**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(예: 고정금리로 취급한 3년만기주택담보대출을 만기 1년 전에 1억원을 중도상환할 경우, 최대 466,666원(윤년은 467,518원 부과))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의 잔여일수 및 상환금액에 따라 달라지며, 중도상환 시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.
- Q4.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?
 - A.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,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,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인지세,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🕐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
 - ▲ 대출금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, 연체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(예: 대출원금이 1억원인 경우, 최대 월 연체이자 25만원 발생) 상세내용은 본 상품설명서의 [7.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]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) 민원 · 상담 · 분쟁조정 연락처

-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 또는 고객센터(1599-22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(http://www.fcsc.kr) 또는 대표번호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() 금융소비자에 불이익에 관한 사항

•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, 특히 <u>만 65세 이상 등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</u>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▲ [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]

- ㆍ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ㆍ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ㆍ중도상환해약금 ㆍ연체정보 등 등재
- ·지연배상금율(연체이자율) 및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 부과 사유 ·기타 불이익 사항

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는 본 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②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, ④ 대출금리 산정 방식 및 결정요인, ●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, ⑩ 기타유의사항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됩니다.







잠깐!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

"주택담보대출은 고객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상품입니다"

● **대출의 변제기가 도래**하였거나 **기한의 이익이 상실**되었음에도 <u>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</u>, 은행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객님께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<u>소유권을 상실</u>할 수 있습니다.

"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"

● 주택담보대출은 LTV·DTI·DSR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(용어의 상세한 의미는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). 이는 대상 주택의 지역과 담보가치, 채무자의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의 한도와 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

"주택의 위치·시세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가능여부 및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"

● **주택이 위치한 지역, 시세, 개인의 소득 등**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, 대출가능 여부 및 금리, 한 도와 관련하여서는 은행 직원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"주택을 이미 보유하는 경우, 추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"

- 기존 주택 보유 세대가 법령에서 정한 규제지역에서의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거나, 실질용도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영위하고자 함일 때 등 주택보유 여부와 대상 주택의 지역, 대출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고객이 기존에 보유중인 주택과 관련하여 처분·전입 등을 하기로 하는 **별도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** 등에 한하여 예외 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.

"주택담보대출 관련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"

● 관련 법령에 따라 대출계약 체결 시, 별도 이행이 필요한 약정이 체결 될 수 있습니다. 해당 약정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대출만기 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셔야 하며,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로 분류되어 연체이자 가 부과되고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.





1 상품개요 및 특성

| ① 상 품 명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② 적용(예상)금리 | % | ③ 대출금액 | <u> 원</u> |
| ④ 금리적용방식 | □ 변동 □ 고정 □ 혼합 | ⑤ 대출기간 (또는 만기일) | |
| ⑥ 중도상환해약금 부과 여부 | □ 대상 □ 비대상 | ⑦ 휴일대출상환 대상여부 | □ 대상 □ 비대상 |
| ⑧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| □ 대상 □ 비대상 | ⑨ 상환방법 | □ 만기일시상환 □ 원리금균듕상환(일부/전액) □ 원금균듕상환 (일부/전액) □ 기타 () |

- ✓ 대출금리 변동 등으로 상품설명 단계에서 고객님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✓ 대출계약 체결로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대출금액과 이자, 수수료 등을 합산한 총액이며, 정확한 금액은 대출 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심사 후 은행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(2)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

- **채무자의 채무불이행**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**채무자가 부담**하여야 합니다.
- **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** 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,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**채무자가 부담**하여야 합니다.
- ☑ 중도상환해약금: 중도상환대출금액 × ()% × (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)
 - ☞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신규 슝인일을 기준으로 확정 및 적용하며 이후 변경이 없습니다. 중도상환해약금율은 매년 재산출 하여 당해연도 적용할 요율을 은행연합회(모든 금융기관요율공시)홈페이지에 공시 합니다.
 - ☞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. 대출만기까지 3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
 - ※ 중도상환해약금이란 대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.
 - 다만,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(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)을 체결한 경우,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.
 - (예시)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담보대출을 받고나서 2년후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나에게 적용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은?

| 1억원 x 1.4% x[365(윤년은 366)÷1,095(윤년은 1,096) = 466,666원(윤년은 467,518원) |
|---|
| |

| 1 4 6 × 1.4 % (1.050) & 1.050 (& 1.050) = 400,000 (6 & 1.050) |
|---|
| |
| |

| V | | | | <u> </u> | | | | | | | |
|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| ※ 의지세라 | 인지세번에 | 이해 대초얀정 | 체격시 | 난보하는 | 세근ㅇ로 | 대초그앤에 | 따라 서 | [앤이 : | 차등 ? | 전유된니 |

| 대출금액 | 5천만원 이하 |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10억원 초과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인지세액 | 비과세 | 7만원 | 15만원 | 35만원 |
| 고객부담 | - | 3만 5천원 | 7만 5천원 | 17만 5천원 |
| 은행부담 | - | 3만 5천원 | 7만 5천원 | 17만 5천원 |





MIXIO V

☑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

| 구 분 | 부담하게 되는 금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기존 근저당권 설정둥기의 감액/말소 | • 건당 비용 발생 (보통 건당 50,000원) |
| 기존 근저당권 설정듕기의 주소 변경 | • 1건 : 30,000원 • 2건 이상 : 1건당 10,000원 추가 |
| 확인 서면 (듕기필즁이 없는 경우) | • 법무사 보수료 30,000원 |
|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| •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1% X 일별 채권할인율(근저당권 설정일 기준) * 예시) '21.7.30일 기준 1억원 설정시 43,750원 부담 ※ 상세 금액은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|

☑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

※ 다만, 대출 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 시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.

| 구 분 부담하게 되는 금액 | |
|-----------------|---|
| 근저당권 설정 신규 설정비용 | • 등록면허세 + 지방교육세 + 등기신청수수료 + 법무사수수료 * 예시) 대출금액 2억(채권최고액 2.2억) 기준 등록세 44만원 + 교육세 8.8만원 + 등기신청수수료 1.5만원 + 법무사수수료 19.9만원 = 74.2만원 |
| 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조사 | •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주소지에 따라 상이 * 예시) 일반지역 15,000원, 원거리지역 22,000원 |
|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 수수료 | •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종류, 주소지, 감정가격 등에 따라 상이 * 예시) 서울 단독주택 감정가 9억 기준, 약 94만원(수수료 88.4만원 + 실비 5.6만원) |

| ☑ 담보신탁수수료 : 담보신탁보 | 수 및 신탁회사로의 듕기(| 이전 관련 비용은 은 | 2행이 부담합니다.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다만, PF, 신디케이트론 등 특- | 수여신은 비용의 부담주체 | 네를 달리 적용하기 | 로 정한 경우 담보신 | 탁보수는 |
| ()이 부딤 | 하며, 신탁회사로의 등기 | 이전 관련 비용은 (| <u> </u> | _)이 부담합니다. |
| ☑ 기타 수수료 : 항목 (|) 금액(|) %, | | 원 |
| ☑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 | <mark>분명하지 아니한 비용</mark> : 형 | 남목 (|), (|) 원 |
| • 고객과 은행이 각 50%씩 분 | 담합니다. | | | |

3 금융소비자의 권리

가. 청약철회권

-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,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, ③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)
 - ※ 단,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제외대상상품, 서민금융 생활지원대상 등 철회 비대상 상품인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⊙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<u>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으로 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</u>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<u>대출금</u>과이에 대한 <u>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</u>하여야 합니다.
- ⊙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며,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<u>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</u>하는 경우, **신규대출 · 만기연장**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나. 금리인하요구권

- ※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금리인하요구권 대상상품에 한함)
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<u>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</u>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취업·승진·재산중가·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 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(은행법 제30조의2)를 말합니다.
 - ※ 단, 정책자금대출·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
-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(신청시기·횟수제한 없음),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(정책자금대출·집단대출 등)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**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**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




다. 위법계약해지권

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- ·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 - ·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 - ·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 - ·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 - ·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-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계약해지 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중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
라. 자료열람요구권

-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 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- ·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-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-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**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**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마. 개인신용평가대응권

- ※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*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 · 삭제 ·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)를 말합니다.
 - * 은행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
-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,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,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**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*할 수 있습니다.**
 - * 서면, 전자우편, 인터넷 홈페이지,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설명요구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제출
- 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**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**, 기초정보가 정정·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,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.
 -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
 -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- ∘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
 -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

바. 복수채무의 채무지정권

- 상환 또는 상계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상환 또는 상계 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경매에 의한 회수금은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상환 또는 상계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상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환 또는 상계하기로 합니다.
 - 단,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,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, 물적 담보나 보중의 유무,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, 변제기의 장단,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상환 또는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사. 채무조정요청권

● 계좌별 대출원금(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)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대출채 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


4 대출금리 산정방식 및 결정요인

● 대출금리의 종류는 크게 고정금리 방식, 변동금리 방식, 혼합금리 방식으로 구분되며, 고객님이 가입하신 상품은 ①-④ 금리선택 상품입니다.

| | 고정금리 | 변동금리 | 혼합금리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운용형태 | 금리 | 리 | 급리 교정금리 변동금리 구간 구간 |
| 특징 | ▶ 대출 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| ▶ 일정주기(3/6/12개월 등) 마다 대 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 금리가 변동 | ▶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이 결합된 형태 |
| 장점 | ▶ 시장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이 없음 | ▶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부담 경감 가능 | ▶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중간적 형태로서 금융소비자의 자금계획 |
| 단점 | ▶ 시장금리 하락기에 금리 인하효 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| ▶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중가 ※ 금리상승기의 이자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금리의 상한수준을 미리 정하는 형태의 상품도 있음 | 에 맞춘 운용 가늉 |

⊙ 대출금리 결정(변동)요인

- · **결정된 대출금리**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(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, 거래실적에 따른 부수거래감면금리 등)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· 신용등급 변동, 기한연장, 채무자변경 등 **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**에는 변경 시점의 원가요소와 마진 및 가감조정 전결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· 대출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와 목표이익률(마진)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.
- ·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표시됩니다.

| | ② 가산금리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① 대출 기준금리 | 리스크 프리미엄 | 유동성 프리미엄 | 신용 프리미엄 | 자본비용 | 업무원가 | 법적비용 | 목표 이익률 | 부수거래 감면 | 본부조정 | 영업점장 전결 조정 | = ③ 최종 금리 |
| 자금조달금리 ④ 리스크 관리비용 등 원가 | | | | ⊕ 마진 | 가: | ⊕ ⊝ 감조정 전결 금 | 금리 | = 최종 금리 | | |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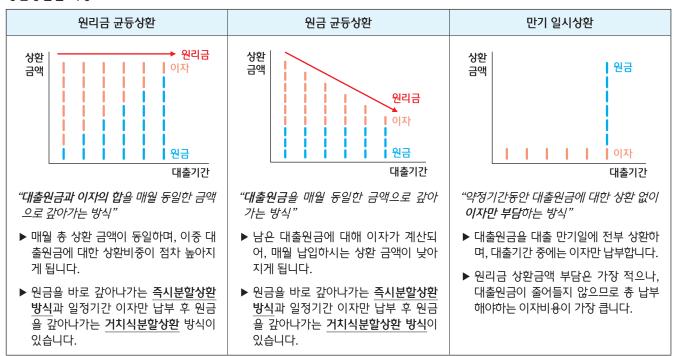
■ 대출 기준금리는,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시 실제 변하는 금리로, 고객님은 코픽스(COFIX), 금융채 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(CD금리 등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음), 기준금리별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.

| 구분 | 금용채 | COFIX(신규취급 기준) | COFIX(신잔액 기준) | | | |
|-------------|---|---|---|--|--|--|
| | ▶ 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금리 | ▶ COFIX(Cost of fund index,코픽스)는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'조달비용 지수'를 의미하며, 주요 8개 은행의 예적금·금융채 등 조달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 ▶ 매월 15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고시 | | | | |
| 내용 | ▶ 만기 6개월,1년,5년 등 대출만기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(매일 공표) | ▶ (기준) 신규취급액 ▶ (기간) 광시 전월 1개월 ▶ (항목) 정기예금,정기적금, 금융채,CD,RP 등 8개 | ▶ (기준) 잔액 ▶ (기간) 공시 전월말 ▶ (항목) COFIX(신규)항목 +요구불예금 등 결제성 자금,기타차입금 등 포함 | | | |
| | ▶ 시장금리이므로, 금리 상승기, 금리 하락기 변동 상황을 그대로 반영 | ▶ 시장금리보다 예·적금금리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음 | ▶ 전월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 고 금리가 낮은 결제성 자금도 포함 | | | |
| 특징 | ▶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경향(시장상황에 따라 예외적 으로 단기물 금리가 높은 경우도 발생) | ▶ 전월 취급된 조달금리의 가중 평균이므로 은행의 최근 조달 금리 상황을 반영 | ▶ 신규취급에 비해 금리 상승기 상승속도가 완만하나, 금리하 락기에는 신규취급에 비해 하락속도도 완만 | | | |
| 변동 | 금리 - 1년물 - 5년물 | 금리 - 신규 | - 신잔액 | | | |

- ☞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대출 기준금리는 (고객이 직접작성)입니다.
- **가산금리**는 은행이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, 아래 등 과 같이 구성됩니다.
 - 리스크 프리미엄: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 등
 - **원가요소**: 고객의 신용도 · 담보종류에 따른 예상 손실비용, 업무원가(인건비 · 전산처리비용), 세금(교육세 등) 및 준조세성 부담금(보증기관 출연료 등) 등
 - 목표이익률: 은행이 설정하는 수익률
 - 가감조정 전결금리: 부수거래(급여통장 개설·카드실적·수신실적 등) 감면금리, 전결 조정 금리 등

5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

⊙ 상환방법별 특징



-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· 이자율 · 시기
 - ·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상환방법은 11-9 입니다.
 - · 동일한 금리·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하단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⊙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(1억원을 대출기간 5년으로 하여 연 5%로 대출받은 경우)
 - ※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, 실제 납부 원리금은 금리적용방식, 상환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· 원리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

| 대출기간 | 원금 | 이자 | 상환금액 | 대출잔액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년 | 1,810만원 | 500만원 | 2,310만원 | 8,190만원 |
| 2년 | 1,900만원 | 410만원 | 2,310만원 | 6,290만원 |
| 3년 | 1,995만원 | 315만원 | 2,310만원 | 4,295만원 |
| 4년 | 2,095만원 | 215만원 | 2,310만원 | 2,200만원 |
| 5년 | 2,200만원 | 110만원 | 2,310만원 | 0원 |
| 합계 | 1억원 | 1,550만원 | 1.155억원 | - |

· 원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

| 대출기간 | 원금 | 이자 | 상환금액 | 대출잔액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년 | 2,000만원 | 500만원 | 2,500만원 | 8,000만원 |
| 2년 | 2,000만원 | 400만원 | 2,400만원 | 6,000만원 |
| 3년 | 2,000만원 | 300만원 | 2,300만원 | 4,000만원 |
| 4년 | 2,000만원 | 200만원 | 2,200만원 | 2,000만원 |
| 5년 | 2,000만원 | 100만원 | 2,100만원 | 0원 |
| 합계 | 1억원 | 1,500만원 | 1.15억원 | - |

· **만기 일시상환**을 선택한 경우

| 대출기간 | 원금 | 이자 | 상환금액 | 대출잔액 |
|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|
| 1년 | 0원 | 500만원 | 500만원 | 1억원 |
| 2년 | 0원 | 500만원 | 500만원 | 1억원 |
| 3년 | 0원 | 500만원 | 500만원 | 1억원 |
| 4년 | 0원 | 500만원 | 500만원 | 1억원 |
| 5년 | 1억원 | 500만원 | 1.05억원 | 0원 |
| 합계 | 1억원 | 2,500만원 | 1.25억원 | - |

⊙ 상환방법 등에 따른 유의사항

- · **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**: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,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**상환 부담이 증가**할 수 있습니다.
- · **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**: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, **만기연장이**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6 담보권 설정에 대한 사항

- ※ 담보의 제공은 고객님의 **재산상 손실**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당권 (근질권)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, 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(저당권·질권 등)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| 담보권 | 대상 대출상품 | 담보의 대상 | 담보권 설정의 절차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근저당권 | 주택담보대출 |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| ▶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기 |

⊙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

- · **대출의 변제기가 도래**하였거나 **기한의 이익이 상실**되었음에도 <u>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</u>, 은행은 법정절차*에 따라 담보물을 차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.
 - *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물을 경매(매각 및 금전으로 환가)한 후 그 경매대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

7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

가. 연체이자 부담

- ⊙ 연체이자율은 [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]로 적용합니다.
 - 연체가산이자율 : **연** 3%
 -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(15)%로 합니다.
- ⊙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
 -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 - ·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**주택담보대출의** 경우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.
 - ② 「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 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 -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 - ⑤ 「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 - ·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, **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연속하여**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**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**를 내셔야 합니다.
 - 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될 때
 - ·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**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**를 내셔야 합니다.





※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예시 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중 발췌)

- (1)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
- (2)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(제1호의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)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등
- ※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자는 대출금을 <u>즉시 상환</u>하여야 하며, 연체이자 부담,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를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⑤ "개인채무자보호법"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(약정금액 기준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)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
 - · 상기 '①, ③항'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기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대출 원금잔 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-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었을 경우,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**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**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그 밖의 불이익

- 대출 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(신용카드 정지 등)받을 수 있고, 개인신용 점수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,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 - ·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 됩니다.
-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,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(대출 신규 및 연장 제한, 신용점수 하락 등)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8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

-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,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너무 긴 경우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 상환 시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.
- ⊙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 - ·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, 대출계약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- ·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(한도대출), 대출계약 연장 시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 - ·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(공무원대출 등 기타 협약대출 등)의 경우 **자격이 유지되는 경우**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9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

- 개인(신용)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-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-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·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(10) 기타 유의사항

- ⊙ 고가주택보유자의 경우 DTI와 별도의 DSR 등 보다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고객님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추론하기 위하여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을 산출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, 연소 득 대비 연원리금 상환비율이 높은 경우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

ㅎ 하나은행

⊙ 대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

- · 대출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만 부여됩니다.
- · 대출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대출취소 또는 대출심사 거절 시 발생한 비용(등기설정·말소비용, 감정수수료 등)에 대해서는 고 객이 부담해야 합니다.

⊙ 이자 납입방법

- 고객님께서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·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, 이자 납입일(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)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(지연배상금 포함)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- ·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: '매일의 잔액'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(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)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.
- * '매일의 잔액'의 의미 = 마감잔액 + (하루 중 최고잔액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)
- * 개시잔액과 마감잔액은 매일의 잔액을 산정하기 위해 은행이 정한 시작 및 마감 시간의 대출잔액을 말합니다.
-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1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

※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| 항 목 | 예/아니오 |
|---|--|-------|
| 0 |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 위치한 지역, 시세,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대출가능 여부 및 금리, 한도와 관련하여 은행 직 원의 상담을 받으셨나요? | |
| 0 |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<u>3년 이내의 기간 동안</u> 에는 약정하신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 은행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? | |
| 8 |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, 고객님께서는 대출받은 금액을 즉시 상환 하여야 합니다. 확인하셨습니까? | |
| 4 |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객님께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본 상품에 가입하시겠습니까? | |

※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[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]에 대하여 [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]을 확인합니다.
- 본인은 은행직원으로부터 [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]에 대하여 [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]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 (서명/인)

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센터(1599-2222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
ㅎ 하나은행

※ [부록]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| 용 어 | 설 명 |
|------|--|
| 개별거래 | ■ 고객과 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을 대출실행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 니다. |
| 한도거래 | ■ 고객과 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 중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지급 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. |
| 압류 | 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 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 |
| 강제집행 | ■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화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. |
| 담보권 | 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을 금전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저당권, 근질권 등을 의미합니다. |
| 근저당권 |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매각(경매)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활용됩니다. 근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점유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매각(경매)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. |
| 근질권 |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 질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는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고 채권자가 청구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. |
| 양도담보 | 채무자의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 소유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,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채권자가 소유하게 됩니다. |
| 담보신탁 | 위탁자(소유자)가 소유 재산을 수탁자(신탁회사)에게 신탁(소유권 이전)하고 수탁자(신탁회사) 로부터 수익권중서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.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,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(공매)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합니다. |





| 용어 | 설 명 |
|---|--|
| 대위변제 | ■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행위로서 대신 변제해준 제3자(대위변제자)는 채무자에 대 하여 구상권(기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)을 취득합니다. |
| 채무인수 | ■ 채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기존 채무자(구채무자)로부터 제3자(신채무자)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(매수인)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담보대출도 제3자(매수인)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. |
| 채권양도 | 채권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권을 기존 채권자(구채권자)로부터 제3자(신채권자)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 임차인인 채무자가 임대인(구채권자)에게 갖는 임차보중금반환채권을 은행(신채권자)에 양도 (담보로 제공)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. |
| 기한의 이익(상실) | 계약의 내용에 기한이 존재함으로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합니다.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한 대출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존재합니다. 다만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(은행)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. |
| 신용정보 | ■ 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번호 등), 신용거래정보(대출정보 등), 신용도판단정보(연체정보 등), 신용능력정보(재무정보 등), 공공정보(체납정보 등)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. |
| 신용평점 | ■ 개인신용평가회사(CB사)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1점부터 1000점까지 수치화한 지표입니다. ■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신용평점을 활용합니다. |
| 담보인정비율 (LTV, Loan-To-Value) |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담보인정비율 기준은 금융당국 또는 은행 내규에서 담보물 종류별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가능 금액 산정 시 활용됩니다. |
| 충부채상환비율 (DTI, Debt-To-Income) | ● 연소득 대비 부채*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*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, 기타부채는 연간 이자 상환액으로 계산 ●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정지역(투기지역 듕)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. |
|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(DSR, Debt-Service-Ratio) | ■ 연소득 대비 부채*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*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산출합니다. |
| 전세권 | 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후 전세기간 중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 · 수익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 |

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

주택담보대출 상품설명서

- ◈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중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◈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-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·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-

(National Parties For April 1987)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- **주택담보대출**은 주택(단독주택·아파트·다세대주택 등)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 상품으로,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, 이주비대출,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을 포함합니다. (예시 : 모기지론, 아파트론 등)
-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인만큼 고객님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한도 및 금리가 정해지는 신용대출에 비해 일반적으로 금리수준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주택담보대출은 **대출의 목적, 주택의 위치 · 시세 등**에 따라 대출의 가능여부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(만원 · 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

- Q1. 주택담보대출 관련 별도 약정을 체결했는데, 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- A. 관련 법령에 따라 체결된 별도 약정을 위반한 경우 대출만기 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.
- Q2.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?
 - A. 본인의 주택 소유여부, 주택이 위치한 지역, 시세,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상세한 내용은 은행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- Q3.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
 - A.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**중도상환해약금**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(예: 고정금리로 취급한 3년만기주택담보대출을 만기 1년 전에 1억원을 중도상환할 경우, 최대 466,666원(윤년은 467,518원 부과))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의 잔여일수 및 상환금액에 따라 달라지며, 중도상환 시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.
- Q4.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?
- A.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,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,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인지세,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🕑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
 - ▲ 대출금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, 연체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(예: 대출원금이 1억원인 경우, 최대 월 연체이자 25만원 발생) 상세내용은 본 상품설명서의 [7.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]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● 민원 · 상담 · 분쟁조정 연락처

-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 또는 고객센터(1599-22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(http://www.fcsc.kr) 또는 대표번호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() 금융소비자에 불이익에 관한 사항

•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, 특히 <u>만 65세 이상 등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</u>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▲ [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]

- ·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·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·중도상환해약금 ·연체정보 등 등재
- ·지연배상금율(연체이자율) 및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 부과 사유 ·기타 불이익 사항

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는 본 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②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, ④ 대출금리 산정 방식 및 결정요인, ●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, ⑩ 기타유의사항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됩니다.





잠깐!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

"주택담보대출은 고객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상품입니다"

● **대출의 변제기가 도래**하였거나 **기한의 이익이 상실**되었음에도 <u>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</u>, 은행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객님께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<u>소유권을 상실</u>할 수 있습니다.

"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"

● 주택담보대출은 LTV · DTI · DSR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(용어의 상세한 의미는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). 이는 대상 주택의 지역과 담보가치, 채무자의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의 한도와 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

"주택의 위치·시세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가능여부 및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"

● **주택이 위치한 지역, 시세, 개인의 소득 등**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, 대출가능 여부 및 금리, 한 도와 관련하여서는 은행 직원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"주택을 이미 보유하는 경우, 추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"

- 기존 주택 보유 세대가 법령에서 정한 규제지역에서의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거나, 실질용도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영위하고자 함일 때 등 주택보유 여부와 대상 주택의 지역, 대출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고객이 기존에 보유중인 주택과 관련하여 처분·전입 등을 하기로 하는 **별도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** 등에 한하여 예외 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.

"주택담보대출 관련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"

● 관련 법령에 따라 대출계약 체결 시, 별도 이행이 필요한 약정이 체결 될 수 있습니다. 해당 약정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대출만기 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셔야 하며,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로 분류되어 연체이자 가 부과되고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.





1 상품개요 및 특성

| ① 상 품 명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② 적용(예상)금리 | % | ③ 대출금액 | <u> 원</u> |
| ④ 금리적용방식 | □ 변동 □ 고정 □ 혼합 | ⑤ 대출기간 (또는 만기일) | |
| ⑥ 중도상환해약금 부과 여부 | □ 대상 □ 비대상 | ⑦ 휴일대출상환 대상여부 | □ 대상 □ 비대상 |
| ⑧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| □ 대상 □ 비대상 | ⑨ 상환방법 | □ 만기일시상환 □ 원리금균듕상환(일부/전액) □ 원금균듕상환 (일부/전액) □ 기타 () |

- ✓ 대출금리 변동 등으로 상품설명 단계에서 고객님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✓ 대출계약 체결로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대출금액과 이자, 수수료 등을 합산한 총액이며, 정확한 금액은 대출 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심사 후 은행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(2)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

- **채무자의 채무불이행**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**채무자가 부담**하여야 합니다.
- **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** 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,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**채무자가 부담**하여야 합니다.
- ☑ 중도상환해약금: 중도상환대출금액 × ()% × (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)
 - ☞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신규 슝인일을 기준으로 확정 및 적용하며 이후 변경이 없습니다. 중도상환해약금율은 매년 재산출 하여 당해연도 적용할 요율을 은행연합회(모든 금융기관요율공시)홈페이지에 공시 합니다.
 - ☞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. 대출만기까지 3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
 - ※ 중도상환해약금이란 대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.
 - 다만,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(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)을 체결한 경우,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.
 - (예시)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담보대출을 받고나서 2년후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나에게 적용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은?

| 1억원 x 1.4% x[365(윤년은 366)÷1,095(윤년은 1,096) = 466,666원(윤년은 467,518원) |
|---|
| |

| | . — | | , , | (, | , | , | , | _/ |
|---|-----|--|-----|-----|---|---|-------|----|
| ,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
※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듕 적용됩니다.

| 대출금액 | 5천만원 이하 |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10억원 초과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인지세액 | 비과세 | 7만원 | 15만원 | 35만원 |
| 고객부담 | - | 3만 5천원 | 7만 5천원 | 17만 5천원 |
| 은행부담 | - | 3만 5천원 | 7만 5천원 | 17만 5천원 |





☑ 인지세 : (

☑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

| 구 분 | 부담하게 되는 금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기존 근저당권 설정듕기의 감액/말소 | • 건당 비용 발생 (보통 건당 50,000원) |
| 기존 근저당권 설정듕기의 주소 변경 | • 1건 : 30,000원 • 2건 이상 : 1건당 10,000원 추가 |
| 확인 서면 (듕기필즁이 없는 경우) | • 법무사 보수료 30,000원 |
|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| •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1% X 일별 채권할인율(근저당권 설정일 기준) * 예시) '21.7.30일 기준 1억원 설정시 43,750원 부담 ※ 상세 금액은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|

☑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

※ 다만, 대출 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 시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.

| 구 분 | 부담하게 되는 금액 |
|-----------------|---|
| 근저당권 설정 신규 설정비용 | • 등록면어세 + 지방교육세 + 등기신청수수료 + 법무사수수료 * 예시) 대출금액 2억(채권최고액 2.2억) 기준 등록세 44만원 + 교육세 8.8만원 + 등기신청수수료 1.5만원 + 법무사수수료 19.9만원 = 74.2만원 |
| 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조사 | •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주소지에 따라 상이 * 예시) 일반지역 15,000원, 원거리지역 22,000원 |
|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 수수료 | •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종류, 주소지, 감정가격 등에 따라 상이 * 예시) 서울 단독주택 감정가 9억 기준, 약 94만원(수수료 88.4만원 + 실비 5.6만원) |

| ☑ 담보신탁수수료 : 담보신탁보 | 수 및 신탁회사로의 등기(| 이전 관련 비용은 은형 | 행이 부담합니다.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다만, PF, 신디케이트론 듕 특 | 수여신은 비용의 부담주처 | 를 달리 적용하기로 | 정한 경우 담보신 | 탁보수는 |
| ()이 부딛 | 남하며, 신탁회사로의 듕기 | 이전 관련 비용은 (| | _)이 부담합니다. |
| ☑ 기타 수수료 : 항목 (|) 금액(|) %, | | 원 |
| ☑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|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: 항 | 목 (| _), (|) 원 |
| • 고객과 은 행이 각 50%씩 분 | 담합니다. | | | |

3 금융소비자의 권리

가. 청약철회권

-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,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, ③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)
 - ※ 단,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제외대상상품, 서민금융 생활지원대상 등 철회 비대상 상품인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⊙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<u>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으로 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</u>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<u>대출금</u>과이에 대한 <u>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</u>하여야 합니다.
- ⊙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며,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<u>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</u>하는 경우, **신규대출 · 만기연장**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나. 금리인하요구권

- ※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금리인하요구권 대상상품에 한함)
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<u>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</u>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취업· 중진· 재산중가· 개인신용평점 상중 등) 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(은행법 제30조의2)를 말합니다.
 - ※ 단, 정책자금대출·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
-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(신청시기 · 횟수제한 없음),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(정책자금대출·집단대출 등)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**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**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




다. 위법계약해지권

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- ·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 - ·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 - ·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 - ·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 - ·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-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계약해지 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중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
라. 자료열람요구권

-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 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- ·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-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-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**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**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마. 개인신용평가대응권

- ※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*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 · 삭제 ·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)를 말합니다.
 - * 은행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
-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,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,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**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*할 수 있습니다.**
 - * 서면, 전자우편, 인터넷 홈페이지, 어플리케이션 듕을 통해 설명요구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제출
- 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**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**, 기초정보가 정정·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,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.
 -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
 -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- ∘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
 -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

바. 복수채무의 채무지정권

- 상환 또는 상계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상환 또는 상계 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경매에 의한 회수금은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상환 또는 상계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상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환 또는 상계하기로 합니다.
 - 단,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,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, 물적 담보나 보중의 유무,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, 변제기의 장단,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상환 또는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사. 채무조정요청권

● 계좌별 대출원금(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)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


4 대출금리 산정방식 및 결정요인

● 대출금리의 종류는 크게 **고정금리** 방식, **변동금리** 방식, **혼합금리** 방식으로 구분되며, 고객님이 가입하신 상품은 **1**-④ 금리선택 상품입니다.

| | 고정금리 | 변동금리 | 혼합금리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운용형태 | 금리 | 리리 | 급리 교정금리 변동금리 구간 구간 |
| 특징 | ▶ 대출 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| ▶ 일정주기(3/6/12개월 등) 마다 대 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 금리가 변동 | ▶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이 결합된 형태 |
| 장점 | ▶ 시장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이 없음 | ▶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부담 경감 가능 | ▶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중간적 형태로서 금융소비자의 자금계획 |
| 단점 | ▶ 시장금리 하락기에 금리 인하효 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| ▶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중가 ※ 금리상승기의 이자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금리의 상한수준을 미리 정하는 형태의 상품도 있음 | 에 맞춘 운용 가능 |

⊙ 대출금리 결정(변동)요인

- · **결정된 대출금리**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(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, 거래실적에 따른 부수거래감면금리 등)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· 신용등급 변동, 기한연장, 채무자변경 등 **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**에는 변경 시점의 원가요소와 마진 및 가감조정 전결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· 대출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와 목표이익률(마진)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.
- ·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표시됩니다.

| | | | | | ② 가 | 산금리 | 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|--|
| ① 대출 기준금리 | 리스크 프리미엄 | | | | | | = ③ 최종 금리 | | | | |
| 자금 | 조달금리 | ⊕ 리스크 관리비용 등 원가 | | ⊕ 마진 | 가 | ⊕ ⊝ 감조정 전결 금 | 림 | = 최종 금리 | | |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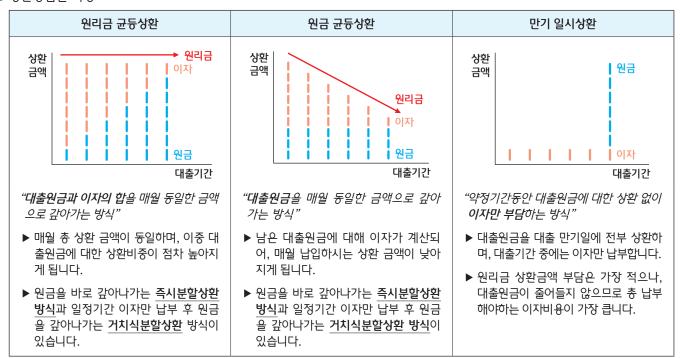
■ 대출 기준금리는,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시 실제 변하는 금리로, 고객님은 코픽스(COFIX), 금융채 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(CD금리 등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음), 기준금리별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.

| 구분 | 금용채 | COFIX(신규취급 기준) | COFIX(신잔액 기준) |
|-------------|---|---|---|
| | ▶ 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금리 | | 스)는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'조달비용 예적금·금융채 등 조달금리를 가중 고시 |
| 내용 | ▶ 만기 6개월,1년,5년 등 대출만기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(매일 공표) | ▶ (기준) 신규취급액 ▶ (기간) 광시 전월 1개월 ▶ (항목) 정기예금,정기적금, 금융채,CD,RP 등 8개 | ▶ (기준) 잔액 ▶ (기간) 공시 전월말 ▶ (항목) COFIX(신규)항목 +요구 불예금 등 결제성 자금,기타차 입금 등 포함 |
| | ▶ 시장금리이므로, 금리 상승기, 금리 하락기 변동 상황을 그대로 반영 | ▶ 시장금리보다 예·적금금리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음 | ▶ 전월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 고 금리가 낮은 결제성 자금도 포함 |
| 특징 | ▶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경향(시장상황에 따라 예외적 으로 단기물 금리가 높은 경우도 발생) | ▶ 전월 취급된 조달금리의 가중 평균이므로 은행의 최근 조달 금리 상황을 반영 | ▶ 신규취급에 비해 금리 상승기 상승속도가 완만하나, 금리하 락기에는 신규취급에 비해 하락속도도 완만 |
| 변동 | 금리 - 1년물 - 5년물 | 금리 • 신규 | - 신잔액 |

- ☞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대출 기준금리는 (고객이 직접작성)입니다.
- **가산금리**는 은행이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, 아래 등 과 같이 구성됩니다.
 - 리스크 프리미엄: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 등
 - 원가요소 : 고객의 신용도 · 담보종류에 따른 예상 손실비용, 업무원가(인건비 · 전산처리비용), 세금(교육세 등) 및 준조세성 부담금(보증기관 출연료 등) 등
 - 목표이익률 : 은행이 설정하는 수익률
 - 가감조정 전결금리: 부수거래(급여통장 개설·카드실적·수신실적 등) 감면금리, 전결 조정 금리 등

5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

⊙ 상환방법별 특징



-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· 이자율 · 시기
 - ·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상환방법은 11-9 입니다.
 - · 동일한 금리·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하단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⊙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(1억원을 대출기간 5년으로 하여 연 5%로 대출받은 경우)
 - ※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, 실제 납부 원리금은 금리적용방식, 상환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· 원리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

| 대출기간 | 원금 | 이자 | 상환금액 | 대출잔액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년 | 1,810만원 | 500만원 | 2,310만원 | 8,190만원 |
| 2년 | 1,900만원 | 410만원 | 2,310만원 | 6,290만원 |
| 3년 | 1,995만원 | 315만원 | 2,310만원 | 4,295만원 |
| 4년 | 2,095만원 | 215만원 | 2,310만원 | 2,200만원 |
| 5년 | 2,200만원 | 110만원 | 2,310만원 | 0원 |
| 합계 | 1억원 | 1,550만원 | 1.155억원 | - |

· 원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

| 대출기간 | 원금 | 이자 | 상환금액 | 대출잔액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년 | 2,000만원 | 500만원 | 2,500만원 | 8,000만원 |
| 2년 | 2,000만원 | 400만원 | 2,400만원 | 6,000만원 |
| 3년 | 2,000만원 | 300만원 | 2,300만원 | 4,000만원 |
| 4년 | 2,000만원 | 200만원 | 2,200만원 | 2,000만원 |
| 5년 | 2,000만원 | 100만원 | 2,100만원 | 0원 |
| 합계 | 1억원 | 1,500만원 | 1.15억원 | - |

· **만기 일시상환**을 선택한 경우

| 대출기간 | 원금 | 이자 | 상환금액 | 대출잔액 |
|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|
| 1년 | 0원 | 500만원 | 500만원 | 1억원 |
| 2년 | 0원 | 500만원 | 500만원 | 1억원 |
| 3년 | 0원 | 500만원 | 500만원 | 1억원 |
| 4년 | 0원 | 500만원 | 500만원 | 1억원 |
| 5년 | 1억원 | 500만원 | 1.05억원 | 0원 |
| 합계 | 1억원 | 2,500만원 | 1.25억원 | - |

⊙ 상환방법 등에 따른 유의사항

- · **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**: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,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**상환 부담이 증가**할 수 있습니다.
- · **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**: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, **만기연장이**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6 담보권 설정에 대한 사항

- ※ 담보의 제공은 고객님의 **재산상 손실**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당권 (근질권)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⊙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, 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(저당권 · 질권 등)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| 담보권 | 대상 대출상품 | 담보의 대상 | 담보권 설정의 절차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근저당권 | 주택담보대출 |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| ▶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기 |

⊙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

- · **대출의 변제기가 도래**하였거나 **기한의 이익이 상실**되었음에도 <u>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</u>, 은행은 법정절차*에 따라 담보물을 차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.
 - *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물을 경매(매각 및 금전으로 환가)한 후 그 경매대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

7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

가. 연체이자 부담

- ⊙ 연체이자율은 [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]로 적용합니다.
 - 연체가산이자율 : **연** 3%
 -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(15)%로 합니다.
- ⊙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
 -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 - ·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**주택담보대출의** 경우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.
 - ② 「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 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 -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 - ⑤ 「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 - ·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, **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연속하여**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**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**를 내셔야 합니다.
 - 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될 때
 - ·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**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**를 내셔야 합니다.





※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예시 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중 발췌)

- (1)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
- (2)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(제1호의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)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등
- ※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자는 대출금을 <u>즉시 상환</u>하여야 하며, 연체이자 부담,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를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⑤ "개인채무자보호법"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(약정금액 기준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)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
 - · 상기 '①, ③항'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기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대출 원금잔 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-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었을 경우,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**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**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그 밖의 불이익

- 대출 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(신용카드 정지 등)받을 수있고, 개인신용 점수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,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 - ·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 됩니다.
-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,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(대출 신규 및 연장 제한, 신용점수 하락 등)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8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

-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,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너무 긴 경우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 상환 시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.
- ⊙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 - ·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, 대출계약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- ·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(한도대출), 대출계약 연장 시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 - ·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(공무원대출 등 기타 협약대출 등)의 경우 **자격이 유지되는 경우**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9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

- 개인(신용)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-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-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·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(10) 기타 유의사항

- ⊙ 고가주택보유자의 경우 DTI와 별도의 DSR 등 보다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고객님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추론하기 위하여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을 산출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, 연소 득 대비 연원리금 상환비율이 높은 경우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

ㅎ 하나은행

⊙ 대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

- · 대출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만 부여됩니다.
- · 대출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대출취소 또는 대출심사 거절 시 발생한 비용(등기설정·말소비용, 감정수수료 등)에 대해서는 고 객이 부담해야 합니다.

⊙ 이자 납입방법

- 고객님께서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·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, 이자 납입일(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)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(지연배상금 포함)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- ·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: '매일의 잔액'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(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)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.
- * '매일의 잔액'의 의미 = 마감잔액 + (하루 중 최고잔액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)
- * 개시잔액과 마감잔액은 매일의 잔액을 산정하기 위해 은행이 정한 시작 및 마감 시간의 대출잔액을 말합니다.
-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1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

※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| 항목 | 예/아니오 |
|---|--|-------|
| 0 |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 위치한 지역, 시세,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대출가능 여부 및 금리, 한도와 관련하여 은행 직원의 상담을 받으셨나요? | |
| 0 |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<u>3년 이내의 기간 동안</u> 에는 약정하신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 은행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? | |
| 8 |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, 고객님께서는 대출받은 금액을 즉시 상환 하여야 합니다. 확인하셨습니까? | |
| 4 |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객님께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본 상품에 가입하시겠습니까? | |

※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[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]에 대하여 [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]을 확인합니다.
- 본인은 은행직원으로부터 [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]에 대하여 [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]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 (서명/인)

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센터(1599-2222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
ㅎ 하나은행

※ [부록]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| 용 어 | 설 명 |
|------|--|
| 개별거래 | ■ 고객과 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을 대출실행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 니다. |
| 한도거래 | ■ 고객과 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 중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지급 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. |
| 압류 | 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 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 |
| 강제집행 | ■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화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. |
| 담보권 | 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을 금전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저당권, 근질권 등을 의미합니다. |
| 근저당권 |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매각(경매)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활용됩니다. 근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점유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매각(경매)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. |
| 근질권 |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 질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는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고 채권자가 청구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. |
| 양도담보 | 채무자의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 소유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,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채권자가 소유하게 됩니다. |
| 담보신탁 | 위탁자(소유자)가 소유 재산을 수탁자(신탁회사)에게 신탁(소유권 이전)하고 수탁자(신탁회사) 로부터 수익권중서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.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,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(공매)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합니다. |





| 용 어 | 설 명 |
|---|--|
| 대위변제 | ■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행위로서 대신 변제해준 제3자(대위변제자)는 채무자에 대 하여 구상권(기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)을 취득합니다. |
| 채무인수 | 채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기존 채무자(구채무자)로부터 제3자(신채무자)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(매수인)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담보대출도 제3자(매수인)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. |
| 채권양도 | 채권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권을 기존 채권자(구채권자)로부터 제3자(신채권자)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 임차인인 채무자가 임대인(구채권자)에게 갖는 임차보중금반환채권을 은행(신채권자)에 양도 (담보로 제공)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. |
| 기한의 이익(상실) | 계약의 내용에 기한이 존재함으로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합니다.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한 대출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존재합니다. 다만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(은행)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. |
| 신용정보 | ■ 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번호 등), 신용거래정보(대출정보 등), 신용도판단정보(연체정보 등), 신용능력정보(재무정보 등), 공공정보(체납정보 등)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. |
| 신용평점 | ■ 개인신용평가회사(CB사)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1점부터 1000점까지 수치화한 지표입니다. ■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신용평점을 활용합니다. |
| 담보인정비율 (LTV, Loan-To-Value) | ■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■ 담보인정비율 기준은 금융당국 또는 은행 내규에서 담보물 종류별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가능 금액 산정 시 활용됩니다. |
| 충부채상환비율 (DTI, Debt-To-Income) | ● 연소득 대비 부채*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*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, 기타부채는 연간 이자 상환액으로 계산 ●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정지역(투기지역 듕)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. |
|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(DSR, Debt-Service-Ratio) | ■ 연소득 대비 부채*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*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산출합니다. |
| 전세권 | 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후 전세기간 중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 · 수익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 |

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

